# 57 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

 성별
 나이
 30세
 직종
 타이어 제조업
 업무관련성
 높음

#### 1 개 요

근로자 (망)최〇〇는 2006년 1월 1일 〇〇타이어(주) 중앙연구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 5월 20일 새벽 3시경에 기숙사에서 취침도중 사망하였다. 〇〇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부검을 시행한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.

### 2 작업내용 및 환경

(망)최○○는 ○○타이어(주) 중앙연구소 RE 개발팀에서 타이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.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업무 및 각종 연구보고서 작성, 벤치마킹 업무 및 보고서 작성, 타이어설계 신제품 개발 및 확산 업무였다. 현재, (망)최○○의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, 출입시 지문 check 기록, 보안카드 최종 check 시간, PC off time 및 동료진술과 근무상황에 대한 사실들로 계산한 근무시간은 주당 50시간을 넘게 근무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.

# 3 의학적 소견

부친에 의하면 (망)최ㅇㅇ는 과거력상 심장질환이나 기타 질환이 없었다고 한다. 동료근로자 및 기숙사 동거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 1달 이전부터 (망)최ㅇㅇ가 몹시 피곤하였다는 사실이 망인의 표정 및 상황 근거를 통해 확인이 되며, 기숙사 동거인의 진술에 의하면 (망)최ㅇㅇ가 코골이나 잠꼬대가 심하였다고 하는데

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. 대체로 음주를 기피하는 편으로 2006년 검진 문진표 상에서 월 2-3회 음주를 하며 1회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신다고 기재했으며 흡연을 하루 반 갑 이상한 갑 미만씩 5-9년으로 기재하였다. 2006년 및 2007년 건강검진 수검자료 결과를 살펴보면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이 없었고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소견은 없었다. (망)최○○는 2007년 5월 20일 새벽 3시경 기숙사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(망)최○○를 최초 발견한 기숙사 동거인의 진술에 의하면 얼굴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엎드린 자세였다고 한다. (망)최○○의 시신은 사인 검정을 위하여 부검을 하였고 심실 좌하벽의 국소적으로 암적색의 변색을 확인한 바, 심근경색에 의한 국소 심근 괴사를 추정하고 혈중 알코올 및 독극물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급성심근 경색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. 특징적인 것은 심장 내 관상동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증만이 발견되었고 동맥경화반 파열 및 혈전 등에 의한 경색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부검의는 이는 관상동맥연축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. 즉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다.

# 4 결 론

근로자 (망)최ㅇㅇ은

- ① 사망당시 위 질환의 촉발요인인 만성피로 및 수면부족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,
- ② 일반적으로 연구원의 업무는 높은 업무부하 및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어, 이는 망인의 만성피로 및 수면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③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50시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,
- ④ 과거 개인력 상 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소인이 없었으므로,

위 근로자의 질환은 업무에 따른 '만성적 과로'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